

# 산학협력중점교원 임용 및 운영규정

개정 2019.04.17. 개정 2019.11.27. 개정 2022.11.02. 개정 2024.08.08.

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「고등교육법」 제15조 제2항에 따라 혜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산학협력을 전담할 수 있는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자격, 임용절차,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9.04.17., 2019.11.27.>

## 제2조 (정의)

산학협력 중점교원이라 함은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, 연구, 창업, 취업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,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한다.

## 제3조 (임무)

산학협력 중점교원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.

- ① 산학협력 교육
- ② 산학협력 연구
- ③ 취업 및 창업 지원
- ④ 기업지원 및 정책기획
- ⑤ 기타 산학협력과 관련된 업무

## 제4조 (유형)

산학협력 중점교원은 임용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- ① 채용형 전임교원 : 최초 임용 시 산학협력을 목적으로 채용된 전임교원
- ② 지정형 전임교원 : 최초 임용시에는 산학협력을 목적으로 채용되지는 않았으나, 추후에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지정된 전임교원
- ③ 채용형 비전임교원 : 최초 임용시 산학협력을 목적으로 채용되고 전일제로 근무하는 비전임교원

## 제5조 (유형별 자격기준)

산학협력 중점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의 유형별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. 산업체 경력이란 민간 산업체, 국가기관,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 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.

- ① 채용형 전임교원 :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
- ② 지정형 전임교원 : 산업체 경력에 제한 없음
- ③ 채용형 비전임교원 :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

단,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원임면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체 경력 10년중 3년의 범위 안에서 경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.

1.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 1회 이상인 자
2. 기술사,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
3. 박사학위 소지자는 3년,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, 단, 산학협력연구과제를 행하는 경우에 한함.

#### 제6조 (임용 및 지정절차)

임용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임용한다.

- ① 채용형 전임교원 :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.
- ② 지정형 전임교원 : 해당교원의 희망여부를 확인 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.
- ③ 채용형 비전임 교원 : 학과(계열)의 추천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.

#### 제7조 (업적평가) <개정 2015.10.08.>

- ① 채용형 전임교원 :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교수업적평가 및 재계약, 승진임용은 [별표 1]의 “산학협력중점교원 업적평가 기준”에 준한다.
- ② 지정형 전임교원 : 본교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다. 단, 교원업적평가 규정 [별표 1]의 연구활동 영역의 연구실적은 임용기간 1년을 기준으로 30% 인정한다.
- ③ 같은 조①항, ②항의 업적평가는 임용일 기준 1년 단위로 실시한다.<조항신설 2024.08.08.>

#### 제8조 (재임용 및 승진)

산학협력 중점교원은 계약기간 중 승진 임용할 수 있다.<개정 2015.10.08.>

- ① 채용형 전임교원 : 산학협력 중점교원의 재계약 및 승진은 제7조의 업적평가 점수에 의해 평가하며 승진소요년수는 교원인사규정의 제31조를 따른다. 단, 1년 계약 신규임용자의 재계약 평가는 업적평가 항목 중 산학협력활동 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항목에 따르며, 총장은 산학협력을 통해 학교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에 대해서 업적평가 점수와 상관없이 재계약 임용할 수 있다.<개정 2019.11.27., 2022.11.02.>
- ② 지정형 전임교원 :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. 단, 연구실적은 임용기간 1년을 기준으로 30% 인정한다.
- ③ 채용형 비전임교원 : 재임용 절차는 본교 초빙교원임용규정에 따른다.

#### 제9조 (임용기간)

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임용기간은 유형별로 다음과 같다.<개정 2015.10.08.>

- ① 채용형 전임교원 : 최초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임용계약으로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재임용할 수 있다.
- ② 지정형 전임교원 : 최초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이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.

해당교원이 연장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전의 일반 전임교원 신분으로 임용한다.

- ③ 채용형 비전임교원 : 최초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.

#### 제10조 (보수)

- ① 채용형 전임교원 : 임용계약에 따라 결정한다. <개정 2015.10.08.>
- ② 지정형 전임교원 : 본교 교원연봉제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.
- ③ 채용형 비전임교원 : 임용계약에 따라 결정한다.
- ④ 임용형태에 관계없이 사업운영 성과에 따라 사업비에서 추가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## 제11조 (휴직)

- ① 채용형 전임교원과 지정형 전임교원 :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.
- ② 채용형 비전임교원 : 계약기간 중 휴직을 할 수 없다. 다만 질병 또는 천재지변으로 부득이한 경우 한 학기에 한하여 휴직을 허가할 수 있으며, 휴직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#### 제12조 (책임강의시수)

- ① 채용형 전임교원과 지정형 전임교원 : 본교 강의담당시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전임교원 주당 책임강의 시수의 30% 이상을 감면한다.<개정 2015.10.08.>
- ② 채용형 비전임교원 : 주당 책임강의 시수는 8시간 이내로 한다.

#### 제13조 (실적보고)

임용형태에 관계없이 산학협력 중점교원은 매년도 수행한 실적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.

#### 제14조 (계약해지)

- ① 채용형 전임교원 : 재임용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종료일에 자동 면직되며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<개정 2015.10.08.>
  1. 평가기준에 의한 재임용평가 결과가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경우
  2. 사업참여 인력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사업이 종료될 시
  3. 본교 교원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  4. 관계 법령 및 제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
  5. 대학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
- ② 지정형 전임교원 :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.<개정 2015.10.08.>
- ③ 채용형 비전임교원 :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재임용 약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종료일에 자동 면직된다.

제15조 (복무)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, 초빙교원임용규정, 겸임교원 임용규정, 교직원 복무규정, 교원윤리강령을 준용한다.<개정 2015.10 .08.>

제16조 (운영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개정 2015.10.08.>

부 칙(2014.07.31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4년 0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10.08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5년 10월 0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01.05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6년 01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04.17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11.27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11.02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11월 0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3.08.25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3년 08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08.08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4년 08월 08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신설 2015.10.8.> <개정 2016.01.05., 개정 2019.04.17., 개정 2023.08.25.>

## 산학협력중점교원 업적평가 기준

구분	평가항목	세부평가항목	평가단위	기준점수	상한점	필수요건	확인부서	
강의평가 (10)	강의평가	강의평가 점수를 상한점수 대비 환산	학기당	취득점수 × 0.12	10		교무팀	
부서평가 (10)	품위 및 태도	소속 학과 조직평가 점수		5	10		소속학과/ 주관부서	
		업무 주관부서 조직평가 점수		5				
산학협력 활동 평가 (60)	산학협력 교육 및 연구 활동 (40)	학생취업 연계 ▼	1인당	2	30	5인	취창업지원팀	
		현장실습, 현장견학 지도 ▼	건당	2	10	3건	현장실습지원팀	
		산학협력 또는 인턴십 체결, 유지 ▼	건당	2	10	3건	현장실습지원팀	
		학생상담평가	지도학생비율		10		교무팀	
	산학협력 및 봉사 활동 (20)	산업체 위탁교육 학과 유치	1개과	5	10		교무팀	
		외부 연구비 수혜	500만원당	1	5		산학협력단 평생교육원	
		대외 수상경력	건당	1	5		교무팀	
		대학발전기금	기부	50만원당	1	10		대외협력팀
		(장학금, 기부금, 기자재)	유치	100만원당	1	10		총무팀 학생팀
	정성평가(20)	학교 및 학과발전 기여도-총장평가				20		교무팀

1. 필수요건 : ▼로 표시된 필수항목 중 2개 이상 충족 시 재임용대상
2. 각종 평가항목은 산학협력이외의 외부사업도 포함됨
3. 각종 평가항목에서 개인적인 연구용역 및 과제는 제외함
4. 총점 100점 만점에 70점미만의 경우 재임용에서 제외한다.